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○구, ○구, ○○군

내 용

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판매업, 식육가공업 등의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[별표11](행정처분 기준)에 따라 ‘경고(1차 위반)의 행정처분’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[별표16]에 따라 ‘과태료 10만원(1차 위반)’을 부과하여야 한다.

또한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포장처리업자가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[별표12] 1의 ‘나’¹⁾목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[별표11]에 따라 ‘경고(1차 위반)의 행정처분’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[별표16]에 따라 ‘과태료 20만원(1차 위반)’을 부과하여야 하며,

축산물 판매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[별표12]의 ‘가’²⁾목, 축산

1)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·위생모(도축장의 경우 안전모) 및 위생화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.
2)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

물포장처리업자가 [별표 13]의 ‘가3)’목 ‘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하며,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·운반·판매·가공하여야 한다.’ 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[별표11]에 따라 ‘경고(1차 위반)의 행정처분’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[별표16]에 따라 ‘과태료 30만원(1차 위반)’을 부과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울산광역시 ○○군(○○○과), ○구(○○○과)는 아래 [표1]과 같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, 위생복(위생모) 미착용, 축산물의 위생적 보관·운반·판매·가공의무 미준수로 적발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면서,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(1차 위반시 ‘경고’)을 병과 하여야 함에도 ‘○○식당 등 4개’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하고 행정처분(1차 위반 시 ‘경고’)을 누락하는 등 행정처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표1] 행정처분(1차 위반 시 ‘경고’) 누락

연번	기관	처분일자	업종	업체명 (대표자)	위반사항	적정처분	실처분	감사확인
1	○○ 군	'17.02.03	식육포장 처리업	○○식품 (○○○)	○ 종업원위생교육미실시 ※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2항1호	과태료10만원 경고	과태료 -	경고처분누락
2		'15.02.09		○○농장 (○○○)	○ 위생복(위생모)미착용 ※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2항1호	과태료20만원 경고	과태료 -	경고처분누락
3		'17.02.03		㈜○○○포 크 (○○○)	○ 위생적 취급 관리 기준 미준수 ※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2항1호	과태료30만원 경고	과태료 -	경고처분누락
4	○구	'16.08.29	식육 판매업	○ ○○직매장 (○○○)	○ 위생적 취급 관리 기준 미준수 ※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2항1호	과태료30만원 경고	과태료 -	경고처분누락

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[별표13] ‘축산물보관업·운반업·판매업·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’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·판매하는 때에는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

3)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·운반·판매·가공하여야 한다.

는 아니 되고, 식육의 부위명칭,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⁴⁾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, 이를 위반하여 식육의 부위 명칭, 등급,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시행규칙 제41조 [별표11] ‘행정처분 기준’ 및 제62조 [별표 16] ‘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’에 따라 행정처분(1차 경고)과 과태료(1차 100만원)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다.

그런데 울산광역시 ○○군(○○○과), ○구청(○○○○단)는 아래 [표2]와 같이 식육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적발한 (주)○○식품 등 2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면서, 행정처분(1차 위반시 ‘경고’)만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표2] 과태료 미부과 현황

연번	기관	처분일자	업종	업체명 (대표명)	위반사항	적정처분	처분	감사확인
1	○○군	2015.08.18	식육판매업	○○식품(주) 판매점 (○○○)	○ 진열 식육 미표시 보관 ※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(축산물의 표시기준) 2항	과태료 100만원 경고	- 경고	과태료 미부과
2	○구	2013.12.02	식육판매업	(주)○○○○유 통 (○○○)	○ 축산물보관시 내용 미표시 ※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(축산물의 표시기준) 2항	과태료 100만원 경고	- 경고	과태료 미부과

조치할 사항 **울산광역시 ○구청장, ○구청장, ○○군수는**

4) (1)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: 식육의 종류·부위명칭·등급·도축장명·유통기한·보관방법, (2)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(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 할 수 있다): 식육의 종류·부위명칭·등급·도축장명·판매가격, (3)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: 식육의 종류·부위명칭·등급·도축장명·포장일자·유통기한·보관방법

[주의] 앞으로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